



보도시점

2026. 3. 6.(금) 06:00
3. 6.(금) 석간

배포

2026. 3. 5.(목) 14:00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모두 함께해요!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 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 안내 영상 배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인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튜브·SNS, 동물사랑배움터(<https://www.apms.epis.or.kr>)

이번 홍보영상은 맹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시행)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5종) 안내, 맹견사육허가 요건 및 벌칙, 맹견수입 또는 동물의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맹견 취급하는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영상 배포를 통해 맹견소유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맹견 관리 제도를 이해하고, 안전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담당자	연구관	조승열 (044-201-2626)



맹견사육허가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육허가 대상 맹견 5종과 그 잡종의 개(사고건·분쟁대상견 맹견 지정 시 포함)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한 개 등

사육허가 절차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사전설문표 포함)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제출



사육허가 신청 요건 맹견의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수술 등

기질평가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격성을 판단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맹견사육허가 불허

벌칙 무허가 사육,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처벌

무허가 사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질평가 명령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맹견 관리의무 사항 준수(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관리, 보호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